

학생 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재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설치)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규정 및 학생안전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의 책임과 의무) 위원회는 학생처와 각 학과(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학기 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처와 학생회에서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중요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9조(안전관리 대상자의 의무)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행사 등을 주관 또는 참여하는 학생은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행사신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생처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
- ③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미 승인된 행사에 대해서는 사고 시 관련 학생이 형·민사 책임을 진다.

제10조(행사의 승인) 행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자로 하여 학생처장에게 행사일 7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1. 대학원장(신대원장)
2. 학과(부)장
3. 관련 지도교수
4. 학생회장

제11조(안전관리 수칙 준수사항) ① 교외에서 진행되는 행사 시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3.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4. 행사(계약) 전 답사
5.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6. 필요시 지도교수 참석과 교직원 동행
7. 예산 집행 내역 공개

② 교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수업방해 및 안전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2. 교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학생안전 지도) 학생의 교내·외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처장, 대학원장, 학과(부)장, 동아리 지도교수, 행사 주관부서, 그리고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은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1. 학생자치기구의 교내·외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단체의 교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학생안전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13조(조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안전을 위해 시설물 이용 제한 및 통제
2. 교내에서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요소에 대한 통제
3. 기타 구성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14조(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①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사 주관부서는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행사 시작 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 및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